



제432회국회(임시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서면의결 대상에
도박 또는 사행행위 정보 추가 〉

■ 이만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316호)

2026. 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 복 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서면의결 대상에 도박 또는 사행행위 정보 추가.....	2
[참고] 방미통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7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만희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11. 18.

다. 회 부 일 : 2025. 11.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으로 인하여 침해된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하여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불법경마 등 사행성 불법도박이 성행하면서 이와 관련한 불법 정보의 발견 및 채증부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이르기까지의 절차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소요되고 있어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도박 또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의 경우에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 사행성 도박 사이트에 대한 신속한 차단 및 폐쇄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3조제4항).

Ⅲ. 검토의견

1.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서면의결 대상에 도박 또는 사행 행위 정보 추가

가. 주요 내용

- 개정안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미심위”)의 회의 중 서면의결이 가능한 대상의 범위에 “도박 또는 사행행위 정보”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4항).

현 행	개 정 안
제23조(회의 등) ① ~ ③ (생략)	제23조(회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등으로 인하여 침해된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하여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부터 이용자를----- ----- ----- ----- ----- ----- -----.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신 설></u> ⑤ ~ ⑦ (생 략)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등에 해 당하는 내용의 정보 2. 「형법」, 「사행행위 등 규 제 및 처벌 특례법」 등의 법 률에 따라 금지되는 도박 또 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 의 정보 ⑤ ~ ⑦ (현행과 같음)

나. 검토 의견

○ 방미심위 회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3항¹⁾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이 원칙임.

- 통신심의를 통한 정보의 차단이나 삭제와 같은 심의조치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심의위원 간의 충

1) 법 제23조(회의 등)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분한 의견교환과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신중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함으로써 심의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임.

○ 다만, 법 제4항2)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³⁾에 따른 촬영물·복제물 등으로 인해 침해된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하여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 서면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성폭력 등의 촬영물·복제물의 경우 불법성이 명백하고, 그 유통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워 즉각적인 구제가 필요하므로, 성폭력 등의 촬영물·복제물로 인해 침해된 권리를 신속히 구제해 긴급히 의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서면의결의 대상으로 하여, 표현의 자유 보장과 불법정보에 대한 신속한 대응 사이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하였음.

2) 법 제23조(회의 등)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등으로 인하여 침해된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하여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개정안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도박 또는 사행행위 정보” 역시 “성폭력 등의 촬영물·복제물”로 인한 경우와 같이 확산속도가 빠르고 파급력이 커서 개인의 재산 또는 신체에 대하여 중대한 침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속한 심의와 차단조치가 필요한 경우 서면의결을 허용함으로써 이용자를 보호하고 불법정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됨.
- 다만, 개정안은 최근 통과되어 시행 중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의해 입법 취지가 이미 달성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지난 2025년 11월 국회 과방위는 심의위원회의 서면의결 대상에 도박 또는 사행행위 정보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취지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제2214862호)을 의결하였음([참고] 방미통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 이후 2026년 1월 국회 본회의가 해당 개정안을 가결하였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월 19일 개정안이 공포 및 시행되었음.
- 법률 제21379호로 개정된 현행법에 따르면 도박 또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로부터 신속히 이용자 또는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에 의해 서면의결이 가능함.

- 따라서 개정안의 취지가 이미 현행법에 반영된 상태라는 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입법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226

참고

방미통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 본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결로 대안으로 제안(2025.11.24.)되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서 의결(2026.1.29.)되었으며,
국무회의에서 공포되어 2026.2.19.부터 시행 중임.

현행	개정안
제23조(회의 등) ① ~ ③ (생략)	제23조(회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등으로 인하여 침해된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하여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부터 신속히 이용자 또는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 ----- ----- ----- ----- ----- -----.
<신 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신 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류의

<u><신 설></u>	<u>사용,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u> <u>해당하는 내용의 정보</u>
<u><신 설></u>	3. <u>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도박</u> <u>또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u> <u>용의 정보</u>
<u><신 설></u>	4. <u>국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 이</u> <u>용자에게 제공되는 정보 중</u> <u>「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u> <u>그 밖에 같은 법에 따라 보호</u> <u>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의</u> <u>정보</u>
<u><신 설></u>	5. <u>「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u> <u>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u> <u>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u> <u>기통신금융사기 등 사기 또는</u> <u>부정한 방법으로 금융거래를</u> <u>하여 국민의 재산에 중대한</u> <u>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u> <u>내용의 정보</u>
<u><신 설></u>	6. <u>「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u> <u>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u> <u>제3호에 따른 자살유발정보</u>
<u><신 설></u>	7. <u>「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u> <u>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u> <u>등의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u> <u>해당하는 내용의 정보</u>

<u><신 설></u>	8. 「<u>개인정보 보호법</u>」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매 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 는 내용의 정보
<u><신 설></u> ⑤ ~ ⑦ (생 략)	9. 「<u>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u>」 제8 조의2에 따른 총포·화약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 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 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에 해 당하는 내용의 정보 ⑤ ~ ⑦ (현행과 같음)